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105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별지1의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. 11. 2. 송탄등기소 접수

제4471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C, 피고 D는 별지1의 부동산 중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. 11. 2. 송탄등기소 접수

제4471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고상교

별지